

## 만 사(4)세 수혜 자격 만료 알림

날짜:

수혜자 이름 및 주소

대리인 이름 및 주소

### 회신: 만 사(4)세 수혜 자격 만료 알림

귀하의 자녀는 현재 **Developmental Disabilities Administration (DDA)**의 수혜자입니다. 해당 자녀의 **DDA 수혜 자격이 만 4세 생일을 기준으로 만료됩니다.** 자녀의 **DDA 수혜 자격을 유지하려면 만 4세가 되기 전 반드시 재신청을** 해야 합니다. 귀하의 자녀가 지적 장애나 뇌성마비, 간질, 자폐증, 또는 기타 지적 장애와 유사한 신경학적 상태나 기타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 자격을 재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.

첨부한 필수 서류표를 보시면 재판정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# 재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?

귀하의 자녀가 만 4세 생일이 되기 적어도 **90일 전까지 DDA Intake & Eligibility** 직원에게 재신청 서류를 요청하십시오.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아래 번호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신청 서류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. 또한 <https://www.dshs.wa.gov/dda/consumers-and-families/eligibility>에서 신청 서류를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
귀하가 재신청 서류를 신청하지 않거나 자녀의 생일이 되기 적어도 **60일 이전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, 자녀의 만 4세 생일에 DDA 수혜 자격이 만료됩니다.** 귀하의 자녀가 DDA에서 유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, 만 4세 생일에 서비스가 종료됩니다.

**DDA 수혜 자격이 만료되어도 Special Education 프로그램 참여나 SSI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** 또한 귀하가 받고 있는 **Medicaid, TANF, 또는 식량지원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등 다른 DSHS 서비스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**

본 서신에 가능한 빨리, 자녀의 만 4세 생일이 되기 적어도 90일 이전까지는 응답하시기 바랍니다. 귀하께 응답을 듣지 못한 경우에는, 귀하께서 자녀의 **DDA 수혜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가정합니다.** 귀하의 자녀가 만 사(4)세가 될 때까지 수혜 자격 조건을 적절한 문서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, 자녀의 **DDA 수혜 자격과 DDA 서비스가 만 사(4)세 생일에 만료됩니다.**

문의사항이 있거나 신청서를 요청하시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.

---

이름

전화번호

이메일 주소

수혜 자격에 적용되는 준거 규칙 사본은 요청 시 제공되거나 인터넷 <https://www.dshs.wa.gov/dda/consumers-and-families/eligibility>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cc: 수혜자 파일

필수 서류표

장애 상태	나이	진단	진단의	기타 기록
발달 지연	만 4세~만 9세	발달 지연	발달 진단이나 평가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전문가	만 사(4)세~만 구(9)세 - 지난 12개월 이내에 진행한 평가에 따라 3개 이상의 기준에서 평균보다 표준편차가 1.5 이상 떨어지거나 생활 연령보다 25% 뒤쳐진 경우
지적 장애	만 4세 이상	지적 장애	면허를 소지한 심리 전문가, 워싱턴 주 인증 학교 심리 전문가 또는 National Assoc. of School Psychologists의 인증을 받은 기타 학교 심리 전문가	지난 36개월 이내에 작성한 전체 심리학 보고서로서 Full Scale IQ 점수가 평균보다 표준편차가 2 이상 떨어지고 적응 기술 평가 점수에서도 평균보다 표준편차가 2 이상 낮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뇌성 마비	만 4세 이상	뇌성 마비 사지마비 반신마비 양측마비	면허를 소지한 전문의	만 삼(3)세 이전에 발병되어 배변, 목욕, 식사, 옷 입기, 이동, 의사소통 등 두 가지 부문 이상에서 매일 직접적인 물리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보
간질	만 4세 이상	간질 또는 발작성 질환	미국 신경과 전문의	병력 및 신경과 검사에 따른 진단, 전문의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통제되지 않고 지속되거나 재발되는 발작을 확인하고 적응 기능이 평균보다 표준편차가 2 이상 떨어져 적응 기술 평가에서 상당한 한계를 나타내는 경우
자폐증 (DSM-IV-TR에 의거)	만 4세 이상	자폐증 또는 자폐 장애 DSM-IV-TR 299.00에 의거	면허를 소지한 심리 전문가, 면허를 소지한 전문의, 자폐증 센터, 발달 센터, 전문 교육 기관 등과 관련된 전문공인등록개업간호사(ARNP), 신경과 전문의, 혹은 발달 및 행동 소아 전문의	DSM-IV-TR에 따른 전체 평가에서 모든 진단 기준을 충족하고, 만 삼(3)세 이전에 사회성, 언어, 의사소통 능력이나 기호 또는 상상 놀이에서 지연이나 이상 기능의 근거 발견 및 적응 기술 평가에서 평균보다 표준편차가 2 이상 떨어져 적응 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나타남
자폐 스펙트럼 장애 (DSM-5에 의거)	만 4세 이상	자폐 스펙트럼 장애 299.00 DSM-5에 의거하여 양쪽 열에서 2, 3단계의 중증도를 나타냄	면허를 소지한 심리 전문가, 면허를 소지한 전문의, 자폐증 센터, 발달 센터, 전문 교육 기관 등과 관련된 전문공인등록개업간호사(ARNP), 신경과 전문의, 혹은 발달 및 행동 소아 전문의	DSM-V에 의거한 전체 평가에서 모든 진단 기준에 부합하고, 만 삼(3)세 이전에 지연 또는 기능 이상 근거가 발견되며 중증도 척도의 양쪽 열에서 2, 3단계 중증도가 나타나고, 적응 기술 평가에서 평균보다 표준편차가 2 이상 떨어지고, FSIQ는 평균보다 표준편차가 1 이상 떨어지거나 DSM-IV의 299.00에 의거하여 자폐성 장애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
기타 신경학 또는 지적 장애와 유사한 다른 상태	만 4세 이상	지적 적응 기술의 결함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경학 또는 영색체 이상	면허를 소지한 전문의	Full Scale IQ 점수에서 평균보다 표준편차가 1.5 이상 떨어지고 적응 기술 평가 점수에서도 평균보다 표준편차가 2 이상 떨어져 적응 기능이 심각하게 제한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<p><b>참고:</b> 본 양식은 일반적으로 안내되는 내용이며 DDA에서 추가 정보나 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본 문서는 수혜 자격을 판정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. DDA 수혜 자격은 WAC Chapter 388-823에 의해 결정됩니다.</p>				